

09

2019-9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5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0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8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1
-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2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부여여고 이전 축구를 위한 의정토론회 26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대구시의회,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세요! 35
- 울산시의회, 추석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36
- 인천시의회, 방콕시와 친선 교류 협력 37



최근 제·개정 법령

•의료법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1
•한식진흥법	43
•양식산업발전법	4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고양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등 질의	48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개정 등 관련 질의	52
•충청남도 부여군 헌혈 관련 조례 제정 등 관련 질의	55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발전소·송전시설 주민 피해방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59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시행 2019. 8. 12.] [대구광역시조례 제5308호, 2019. 8. 12., 일부개정]

주요목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바지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기후변화대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의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6. “온실가스의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부문별 추진사항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국내여건 변화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민·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제8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위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 등) ① 시장은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기본 정보(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지 주소)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감축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심 내 녹지 확충과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원이 증대되도록 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동차의 사용억제 등)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과 자동차 운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 제13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전용차로 운영 확대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친환경운전과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확산) 시장은 친환경운전과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등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 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상황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시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3.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사업개발

4.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군의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립·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연구센터(이하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대응·적응관련 시책 개발 및 연구

2.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3. 환경관련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해외진출 컨설팅

4. 기후변화 관련 국제·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5.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6.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7.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2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7.] [부산광역시조례 제5965호, 2019. 8. 7., 제정]

주요목적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 제고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나.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7조(자격) ① 노동자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자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 노동자이사 2명

제9조(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권한과 책임 등) ①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자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5.]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363호, 2019. 9. 5., 제정]

주요목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 예방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나.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제3조(고용감찰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고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4조(고용감찰관의 임기) ①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용감찰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전임 고용감찰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고용감찰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직무에서 제척된다.

1. 고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고용감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고용감찰관의 해촉) 구청장은 고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고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고용감찰관의 직무)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고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① 고용감찰관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은 고용감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고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① 고용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고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고용감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용감찰관 참관 요청)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

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고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9.]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365호, 2019. 8. 19., 제정]

■ 주요목적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목적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희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유희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희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희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탁자·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희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유희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희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희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희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희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9.]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369호, 2019. 8. 19., 제정]

주요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

1. 둘째아 이상 출산(또는 출산예정)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지침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5.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9.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706호, 2019. 9. 4., 제정]

주요목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5.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요금 감면
6.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부여여고 이전 촉구를 위한 의정토론회

〈19. 8. 30.(금), 15:00~16:30/ 부여문화원 소강당〉



I 총 평

(김기서 의원)

- 본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 촉구와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관계기관, 도의회가 부여여고 이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학교 이전의 필요성은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교육청, 부여군)도 공감하였으며,
 - 학교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비용의 분담을 각 관계기관의 대승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함.
-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정성배 부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1962년 쌍북리 현위치로 이전 한 후 56년이 지난 현재 학교 노후화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심함.
- 컨테이너 식당, 울퉁불퉁한 강당 연결 계단, 교실의 외벽과 내벽의 갈라짐, 노후화된 기숙사의 외벽과 계단, 비좁고 열악한 기숙사 세면대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동떨어진 시설을 사진으로 직접 보여줌.
- 2003년 부여여고 이전의 계획과 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담보 상태임.
- 부여여고 이전관련 특별법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 고도보존과 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한 이전대상
 - 20여 년간 방치 이전 추진 안됨
 - 시설보강 불가로 인한 학교건물 황폐화
 - 교육의 질과 안전 담보 불가
 - 교육 형평성 불합리한 상황
- 부여여고 이전 신축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 문화재청, 충남교육청, 부여군 예산분담(토지보상금, 건축비 등)에 관한 이견
 - 부여여고 황폐화와 안전문제 심화
 - 이전 때까지 필요한 노후(안전)시설 보수 필요
 - 중앙투자 심사 관련 협의 및 통과(이전 개교 추진)

○ 부여여고 이전 추진현황(최근)

- 2012년, 2013년까지 충남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이전추진
- 2015년 5월 충남교육청 -부여군청 회동으로 이전 추진업무 중단
- 2016년 7월 부여여고 중심 정부·국회의원 대상 이전 촉구 집단 민원제기
(부여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4,773명 서명부)
- 2016년 8월 문화재청 담당과장 부여 방문, 관련예산 확보 노력 약속
- 2018년 정부예산 112억원 확보, 부여군이 교육감 대상으로 보상계획 통보
- 2019년 부여군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구성
- 2019년 6월 부여여고 수험생 부여군청 항의 방문
- ※ 관계부처의 분담금 이견으로 학교이전이 답보상태임

○ 부여여고 이전 향후 과제

- 지속 가능한 T/F팀 구성(부여군, 문화재청, 충남교육청)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협의
- 이전에 따른 예산, 예정지 확보 및 이전 전까지 시급한 시설보강 공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함.

2 지정토론(4인)

① 박수완 (부여여고 학생대표)

- 3년 동안 부여여고 학생으로서 느낀 ‘부여여고 이전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함.
- 현재 부여여고의 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함
- 굳이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벽에 금이 없는 교실, 컨테이너가 아닌 쾌적한 급식 공간,
전교생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강당, 물이 새지 않는 기숙사를 원함.

- 대한민국 평균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교육환경을 동등하게 누리고 싶음을 말함.
- 비용(돈)보다 학생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함.
- 부여군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존속을 바랍.

(박수완 학생의 호소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여여고 학생대표 박수완입니다. 오늘 부여여고 이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부여여고 학생으로서 느낀 ‘부여여고 이전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부여여고의 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저희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벽에 금이 없는 교실, 컨테이너가 아닌 쾌적한 급식공간, 전교생이 앉아있을 수 있는 강당, 물이 새지 않는 기숙사를 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단지 대한민국의 평균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교육환경을 동등하게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1학년 때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언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날 김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1학년 동으로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언덕과 높이가 다른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김스를 했을 때 왜 다쳤냐고 물으면 절반은 부실한 학교시설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낙후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벽에 곳곳에 금이 가고 갈라졌으며, 천장이 부서진 곳도 많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아침자습시간에 억세게 내리는 비에 의해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 앉아 밑으로 지붕 이에 고여 있던 모든 물과 이물질들이 솟아 내렸습니다. 밑에 만약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위험이 도사리는 학교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여여고 학생들은 당연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이전을 이유로 건물보수에 제외되며 몇십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을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외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여여고 이전을 위해 2년간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왔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정 협의가 이번에도 잘 안됐나봐. 너희들에게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 돈 ‘의 문제인 것 같아. 어떤 기관이 돈을 얼마큼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 계속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깐 좀 더 기다려보자’ 이 말의 의미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전관련 협의회나 이전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만 봐도

학생들의 안전보다 ‘돈’의 문제가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충청남도 교육청에게, 문화재청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재정문제가 학생들의 안전문제보다 더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는 위험 속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여여고에 모셔서 시설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학생의 안전 문제를 걱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어린 바람을 꼭 가슴에 새기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여고 이전을 위해 거리행진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한 남자 분께서 저희에게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그 분은 부여여고에 진학할 딸아이를 둔 한 아버지셨습니다. 저희에게 ‘제 딸이 다음해에 부여여고에 진학할 예정이라서, 이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여여고 다니는 학생으로서 현재 부여여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사이좋은 선후배관계, 화목한 학교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부여여고를 자랑스럽게 말하며 추천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실하고 낙후한 건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보다도 좋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득한 이상적인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부여여고의 안전성은 자부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인문계 고등학교인 부여여자고등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여여고의 이전은 학생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안전이, 부여의 미래가 ‘돈’의 가치에 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 부여군청과 충청남도 교육청, 문화재청 관계자 분들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신문 방송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면서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우리 학교의 안전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월 후면 졸업하게 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부여여고에 자녀가 다니지 않는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고 내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빠른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다면 미래 부여여고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② 박상우 (부여군의회 의원)

○ 고도보존사업지구 내 학교이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필요성 제기

○ 부여여고 이전에 따라 보상되는 손실보상금액만으로는 학교 이전이 불가해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해야 함.

-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함.
-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부여여고 이전문제는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됨을 강조함.
- 4년전 감정평가에서 보상비는 부여여고 부지 및 지장물 약118억원, 부여도서관 부지 및 지장물 약 39억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여도서관이 2018년 재감정에서 약 60억 원을 받은 만큼 부여여고도 재감정을 받으면 200억 원은 보상비로 받을 수 있을 것임.
-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함.

③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장)

-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및 보전 업무를 하고 있음
- 문화재청이 원인제공자로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는다함.
-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함.
- 문화재청이 손실보상액으로 확보된 예산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상태임을 설명함.
- 관계기관과 부여여고 이전에 관해서 협의 할 것임.

④ 류동훈(충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도교육청은 부여여고 학교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문화재청의 손실보상금 15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부여군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함.

- 부여군과 도교육청, 문화재청이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고 함.
- 부여여고 신입생 감원에 대해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평성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함.
- 학생들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3] 종합토론

- 펜을 잡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손팻말과 전단을 들고 거리에 나가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고 싶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마무리발언 : 박수완 / 부여여고 학생대표]

- 안전과 돈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박수완 학생대표의 말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경이다. 이전 사업이 착수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보수 허가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하겠다.

[마무리발언 :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장]

- 학교이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마땅히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중앙투자 심사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행정적으로 인전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대응투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부여여고 이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9월경에 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다.

[마무리발언 : 류동훈/ 충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올해 6월 부여여고 이전 범부여군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학부모회와동창회 등을 통한 불만의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비왕궁터 발굴·정비 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학교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년 이상 끌어온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문화재청, 부여군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함.

[마무리발언 : 김기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결 과>

- 올해 안에 학교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 교육부, 도교육청, 문화재청, 부여군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 손실보상금 150억 원을 제외한 이전에 필요한 추가 150억 원의 예산을 관계기관의 협이가 이뤄져야 한다.
- 이전 사업이 결정전에 당장 시급한 학교 시설보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부여군의 유일한 인문계여고의 존속에 힘쓰고, 시설 낙후로 인한 부여여고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타지역 학교로 지망하는 인구 유출이 증가하는 현실인 만큼 조속한 이전이 답이다.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군,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에산정책담당관실





대구광역시의회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 에서 하세요!

- 시의회, 9월 4일 '월촌역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9월 4일(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월촌역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내도록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기 행사에는 배지숙 의장과 황순자 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배지숙 의장과 장보기 참여자들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서 월촌역시장 상인회 관계자(회장 박영배)를 만나 상인들의 고충도 진지하게 듣고 상인들에게 격려의 말도 함께 전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추석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지숙 의장은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께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석 장보기는 꼭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에서 인정을 덩으로 받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면 좋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시의회, 추석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8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 시립노인요양원 등 7개소 위문·격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하여 아름주간보호센터(중구), 무지개주간보호센터, 해울이주간보호센터(남구), 다비다노인요양원(동구), 울산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북구), 범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울주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화장지, 세제류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평소 입소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황세영 의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명절이 되면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방콕시와 친선 교류 협력

- 도시계획 및 관광, 농업 등 주요기관 방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용범 의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방콕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시의회는 태국 방콕시의회와 2007년 7월 26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2018년까지 16회에 걸쳐 상호호혜주의를 바탕으로 각 도시의 이해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콕시의회 친선 교류는 지난해 3월 방콕시의회 대표단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후, 같은 해 12월 방콕시의회에서의 공식 초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방콕시의회 친선교류를 위해 방문한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방콕시의회 예방하여 상호 의회 간 우의를 다지고, 방콕시 관광청, 도시계획발전국, 후웨이팡구 노인가정 요양센터, 범룽랏 국제종합병원 및 도시농업교육원 등 태국 주요기관 방문하여 우수분야 벤치마킹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의회

입법에산정책담당관실



1.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며,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다.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4항).

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2호).

마. 의료법인에 두는 임원의 수,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바.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제67조).

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87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1호, 2019.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식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태 조사·평가 실시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5호의2 신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제3항 신설).
- 다.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로서 마지막 인증 취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인증 신청 제한 사유에 추가함(제20조제2항).
- 라.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 마.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 인증기관 임직원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

바. 인증사업자 등이 인증품 등의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등의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3. 한식진흥법

[시행 2019. 8. 28.] [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

제정이유

한식(韓食)은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이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에 대응할 한식 전문인력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경영체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소수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의 도입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식 진흥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19.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정]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 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추진, 양식컨설팅·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의견 19-0243, 2019. 8. 20., 경기도]

【질의요지】

가.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고양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미래용지”로 지정한 고양시 재산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 매각한 경우에 그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양시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고양시장의 매각제한 공유재산의 지정에 관한 법령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 또는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고양시장은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고양시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3필지의 토지를 특정하여 미래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으로 고양시의 다음 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에서 시장이 지정한 미래용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른 처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양시 공유재산에 대해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제한 공유재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그 일반재산의 매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번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고양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고양시장이 공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미래용지”로 지정한 공유 재산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 매각한 경우에 그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같은 규정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고양시장이 “미래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 매각한 경우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주체에 대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추진을 허락한다는 뜻의 행정행위로 이해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주체에 따라 일종의 규제(規制)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장이 “미래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 처분한 토지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의 대상이 법인 또는 그 밖의 민간 주체인 경우라면,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의 근거법령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시장에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 또는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등 관련)

[의견 19-0259, 2019. 9. 3., 경기도]

【질의요지】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3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귀 시에서는 용인시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함)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91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22조), 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성평등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 근거를 둔 자문기관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외에 양성평등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인시조례에서 그 심의위원회가 같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 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 자치단체의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의견 19-0254, 2019. 8. 26., 충청남도]

【질의요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여군은 상품권의 지급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부여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부여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부여군에서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사무가 부여군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자치사무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혈액관리법」제4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헌혈추진협의회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헌혈 권장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혈액관리법」제4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헌혈 권장사무의 수행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4조의4의 규정 내용을 더하여 보면 헌혈 권장사무의 수행 주체를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더불어 의결기관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혈액관리법」제14조에 따라 헌혈 후 발급 받은 헌혈증서는 위급할 경우 본인은 물론 이웃과 친척에게도 증여가 가능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여군이 부여군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사무는 부여군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이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부여군이 헌혈 권장을 위한 목적으로 부여군의 재정에서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점과,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혈액관리법」제2조제4호), 부여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헌혈을 실시한 군민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혈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헌혈을 실시한 군민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헌혈을 실시한 군민에게 부여군이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33 등 참조).

우선,「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이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부여군에서 헌혈을 실시한 부여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부여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부여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발전소·송전시설 주민 피해방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송전선로 지중화율 전국 평균보다 크게 밀돌아 -

충남도의회는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송전시설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합당한 보상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은 2017년 기준 13만 1897(기가와트시)Gwh로, 이 중 62%인 8만 1717Gwh가 수도권 등 외부로 송전됐다.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도내 4168개 고압송전탑과 1376Km 길이의 고압송전선로는 전자파를 내뿜으며 도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9년 9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